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
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행정안전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6. 6. .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의 경우 지방정부가 별도로 단가계약 체결할 수 없고, 시·도지사가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도 그 관할구역에 있는 해당 시·군·구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계약운영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·도지사가 필요시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, 가격·품질·수급의 안정성 등 계약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시·도 또는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의 구매를 허용하여, 지역 수요 특성 반영, 계약 방식의 다양화 및 계약 방식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통보하여야 한다”를 “통보하여야 하며,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가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·도시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수요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 다만, 가격, 품질, 수급의 안정성 등 계약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·도지사 또는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0조(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80조(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·군·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(이하 “수요물품”이라 한다)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. 다만, 「 <u>조달사업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<u>----- . &lt;단서 삭제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 <u>신 설</u> 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<u>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수요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 다만, 가격, 품질, 수급의 안정성 등 계약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·도지사 또는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을</u> |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구매할 수 있다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통보하여야 하며,  
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가  
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6조  
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 
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<삭 제>

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44) 205 - 3783 |